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 Q 비점오염원 집수조내 상등수의 살수 가능여부?

당사는 시멘트 제조업으로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대상으로, 현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신고 및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중 저류조를 설치하여 우수등을 집수하여 토사등을 침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류조 청소를 위한 저류조 내부 퇴적물 제거와 사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집수조내의 상등수를 활용하여 사내에 살수하고자 합니다. 사내에 살수 된 물은 자연건조하여 일부 증발되며, 증발되지 않은 물은 배수로를 통하여 집수조내로 재집수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외로의 배출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수조내 상등수를 사내 부지에 살수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관리·운영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류조는 초기 우수가 유입되는 공간을 제공하여 오염저감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아니한 상등수일 경우 재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배출구(Stack)설치 관련 문의

금번 회사에서 소각보일러(2톤이상/시)를 설치하여 연소가스를 적정 처리한 후 Stack를 통해 바로 대기중으로 확산시키지 않고 Duct를 직접 연결하여 건조공정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굴뚝자동측정기는 부착 대상일 것이며, 굴뚝자동측정기 측정지점을 지난 후단으로 바로 Duct을 (별도의 배출구(Stack)없이) 연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건조공정에는 또 다른 건조공기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최종 건조공정 쪽 배출구에는 희석공기 개념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Stack없이 Duct 중간에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제2항의 측정기 설치 규정에 의거 수직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평굴뚝에도 측정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먼지와 가스상

물질을 모두 측정하는 경우 측정위치는 먼저측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평굴뚝(덕트 등) 중 경로를 이용한 측정기는 하부 직경의 4배 이하인 지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측정위치는 상향 흐름인 경우에는 굴뚝 바닥으로부터 굴뚝 내경의 1/2과 2/3 사이의 단면 위에 위치하여야 하고, 하향 흐름인 경우에는 굴뚝 바닥으로부터 굴뚝 내경의 1/3과 1/2 사이의 단면 위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Q 폐기물 운반업체 변경 후 인계서 작성 가능여부는?**

폐기물 배출자로 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 후 올라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1회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처리업체는 동일하고 운반업체만 다를 경우 폐기물 배출자 변경 신고 조항이 없어 올라시스템에서 기초정보만 변경(운반업 허가업체 변경)하고 인계서를 작성하여도 가능한지요?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 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에만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운반업체만의 변경의 경우, 한국환경공단(대표전화 : 1644-0007)에 확인 결과, 변경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관할 지사에 FAX송부하면, 동 기관에서 기초정보를 수정한 후 위탁처리가 가능하니,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로 기초정보를 수정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Q 오염토양의 처리방법은?**

건설현장이며, 가옥철거 예정입니다. 철거 대상물 중에는 약 20년 가량 영업을 한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당 주유소를 철거 시에는 유류에 의한 토양의 오염이 예상됩니다. 만약, 유류에 의한 토양의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처리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폐기물 처리시(위탁, 자가 등)의 방법과 절차, 토양의 정화 후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방법과 절차 등

**A**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등의 과정에서 토양

오염물질이 누출·유출 등에 의해 해당 부지 및 주변 지역 토양이 오염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오염여부 조사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된 경우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대상에 해당되며, 관할 관청의 조치 명령에 따라 오염원인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오염유출 지점 및 확산이 우려되는 주변 지역에 대해 토양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염 토양 정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된 토양을 재사용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3에 따라 지역별(1, 2, 3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철거 시 발견된 폐기물은 오염토양과 별도 분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Q 유독물 보관소 증설에 관하여...**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독물 보관시설(창고)이 있는데 유독물 사용량이 늘어 보관시설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 인허가상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창고에 유독물을 보관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단) 1. 사용량은 기존 사용량의 50%가 넘지 않으며, 면적 및 보관 예정량도 50%가 넘지 않습니다.
- 2. 비인허가된 창고도 유독물 창고시설의 설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3. 비인허가된 창고에 유독물표지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A**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감할 경우,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할 경우, 등록된 유독물 품목이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유독물 영업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유독물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및 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